

고성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9
----------	-----

제출연월일 : '98. 3. 13.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안사유

고성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중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전구 등과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포대를 제작하여 군민의 행정서비스도모 및 폐기물 수거에 안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폐전구, 유리등을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킬로그램미만의 생활폐기물 삭제함.(안 제4조제1항)

나. 생활폐기물 중 폐전구, 유리등과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포대로 배출하도록 신설함.(안 제4조제4항)

다.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포대를 삽입하고(안 제11조제2항), 각 용도별 색깔을 표시함.(안 동조제3항)

라. 쓰레기봉투 제작시 포대도 제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쓰레기 포대는 읍면사무소 및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도록 신설함.
(안 제13조제3항)

바. 쓰레기 포대 판매가격을 신설함.(안 별지2)

3. 참고사항

· 쓰레기종량제 봉투 포대제작 보급 (도 환경 67500-10001('98. 1. 6))

고성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폐전구 및 파손유리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킬로그램 미만의 생활폐기물 및'을 삭제한다.

제4조제4항 본문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배출시설설치 허가업체'를 '배출시설설치 신고업체'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생활폐기물중 폐전구, 파손유리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과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포대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를 '(쓰레기봉투·포대의 종류 및 용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쓰레기봉투의 크기'를 '쓰레기봉투·포대의 크기'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포대는 합성수지 종류로 하며,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중 가정용은 엷은 노란색, 사업장은 엷은 청색, 공공용은 엷은 흰색으로 하고, 포대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제작)'은 '(쓰레기봉투·포대의 제작)'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봉투·포대'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봉투를 제작함'을 '봉투·포대를 제작함'으로 하고, '봉투사용'을 '봉투·포대사용'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쓰레기봉투 불법제작'을 '쓰레기봉투·포대 불법제작'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쓰레기봉투 공급 또는 판매방법)'을 '(쓰레기봉투·포대의 공급 또는 판매방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쓰레기 포대는 읍면사무소 및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쓰레기봉투·포대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쓰레기봉투·포대'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중 '쓰레기포대 판매가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p>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부 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지정된 시간,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u>다만, 생활폐기물중 연탄재, 폐전구 및 파손유리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킬로그램미만의 생활폐기물 및 거리청소 폐기물은 예외로 한다.</u></p> <p>② (생 학)</p> <p>③ (생 학)</p> <p>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생처리 가능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종류·성상별로 배출,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p>	<p>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부 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지정된 시간,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u>다만, 생활폐기물중 연탄재, 거리청소 폐기물은 예외로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생활폐기물중 폐전구, 파손유리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과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포대로 배출하여야 한다.</p> <p>⑤제1항 내지 제4항의</p> <p>.....</p> <p>.....</p> <p>.....</p> <p>.....</p>

현행	개정
<p>⑤ 1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립 및 수질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 업체는 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할 수 있는 보관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⑤ 배출시설설치 신고 업체.....</p>
<p>제 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용을 다시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하며 가정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p> <p>②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p> <p>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색깔은 일반용중 가정용은 엷은 노란색, 사업장용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공공용은 엷은 흰색으로 한다.</p>	<p>제 11조(쓰레기봉투·포대의 종류 및 용도) ①</p> <p>②쓰레기봉투·포대의 크기.....</p> <p>③.....폴리에틸렌, 포대는 합성수지 종류로 하며,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중 가정용은 엷은 노란색, 사업장은 엷은 청색, 공공용은 엷은 흰색으로 하고, 포대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한다.</p>
<p>제 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p> <p>②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의 겉면에 봉투사용에 관한 문장 광고등을 표시할 수 있다.</p>	<p>제 12조(쓰레기봉투·포대의 제작) ①쓰레기봉투·포대는 군수가 제작한다</p> <p>②봉투·포대를 제작함봉투·포대사용.....</p>

협	행	개	정
<p>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u>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u>를 하여야 한다.</p>		<p>③.....</p>	<p>③.....</p>
<p>제 13조 (<u>쓰레기봉투 공급 또는 판매방법</u>)</p>		<p>제 13조 (<u>쓰레기봉투 · 포대의 공급 또는 판매방법</u>)</p>	
<p>① (생 탁)</p> <p>② (생 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쓰레기 포대는 읍면사무소 및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한다.</p>	
<p>제 14조 (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수수료의 부과 · 징수)</p>		<p>제 14조 (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수수료의 부과 · 징수)</p>	
<p>① (생 탁)</p> <p>1.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u>쓰레기봉투 판매가격</u>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p> <p>.....</p>		<p>① (현행과 같음)</p> <p>1.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u>쓰레기봉투 · 포대 판매가격</u>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p> <p>.....</p>	
<p>제 23조 (보고 및 관계대장동의 확인)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쓰레기봉투</u>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②군수는 <u>쓰레기봉투</u>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p>		<p>제 23조 (보고 및 관계대장동의 확인) ①군수는</p>	<p>제 23조 (보고 및 관계대장동의 확인) ①군수는</p>

현행		개정			
[별표 1]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		[별표 1]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			
봉투용량 (ℓ)	용도	봉투용량 (ℓ)	용도		
5	일반용(가정용) 공공용	5	일반용(가정용) 공공용		
10	일반용(가정용, 사업자용) 공공용	10	일반용(가정용, 사업자용) 공공용		
20	일반용(가정용, 사업자용) 공공용	20	일반용(가정용, 사업자용) 공공용		
30	일반용(가정용, 사업자용) 공공용	30	일반용(가정용, 사업자용) 공공용		
50	일반용(가정용, 사업자용) 공공용	50	일반용(가정용, 사업자용) 공공용		
75	일반용(가정용, 사업자용) 공공용	75	일반용(가정용, 사업자용) 공공용		
100	일반용(가정용, 사업자용) 공공용	100	일반용(가정용, 사업자용) 공공용		
비고 : 1. (생략) 2. (생략)		20KG	소규모 건설폐기물 등(포대)		
		50KG	소규모 건설폐기물 등(포대)		
[별표 2]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생략)		비고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 2]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현행과 같음) 쓰레기 포대 판매가격 (단위:원)			
		구분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액
		20KG	830	70	900
		50KG	1,930	170	2,100

쓰레기포대 판매금액 산출근거

(제 1 안)

□ 산출근거(기존 종량제봉투 기준)

○ 쓰레기봉투 공급액 100ℓ 당 1,518원(1ℓ 당 15.18원)

. 쓰레기 봉투 부피대 무게비중 1ℓ = 0.4KG, 1KG = 37.95원

. 20KG × 37.95원 = 759원 ≒ 760원

. 50KG × 37.95원 = 1,897원 ≒ 1,900원

○ 포대 판매금액

. 20KG : 760원 × 판매수수료(0.09) = 70원 + 760원 = 830원

. 50KG : 1,900원 × 판매수수료(0.09) = 170원 + 1,900원 = 2,070원

(제 2 안)

□ 산출근거(쓰레기처리비용에 따른 기준)

○ 매톤당 쓰레기 처리비용 = 연간총처리비 ÷ 연간총반입량

33,000원/톤 = 626,340,000원/년 ÷ 18,980톤/년

○ 포대단가 계산(1KG당 33원)

. 20KG : 33원 × 20KG = 660원

. 50KG : 33원 × 50KG = 1,650원

○ 포대제작비(한국프라스틱조합단가)

20KG : 170원, 50KG : 250원

○ 포대 판매산정

= 수집·운반·처리비 + 포대제작비 + 판매수수료

※ 판매수수료 = 공급액의 9%, 공급액 = 수집·운반·처리비 + 포대제작비

. 20KG 판매수수료 : (660원 + 170원) × 0.09 = 70원

. 50KG 판매수수료 : (1,650원 + 250원) × 0.09 = 170원

○ 포대 판매금액

. 20KG 판매금액 : 660원 + 170원 + 70원 = 900원

. 50KG 판매금액 : 1,650원 + 250원 + 170원 = 2,070원 ≒ 2,100원